

---

## IV. 보험상품과 세제

---

### 1. 현황

#### 가. 보험의 종류

보험이란 공동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공동비축금을 마련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적 제도를 의미한다.<sup>42)</sup> 또한 보험계약은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분류와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을 구성하는 참여자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 혹은 보험물건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익자를 들 수 있다. 이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이익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대상이 구분되며,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성에 따라 과세대상 및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 1) 보험업법상 분류

보험업법상 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sup>44)</sup> 제3보험은 보험의 목적물(피보험자)이 물건이 아닌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의 특징이 있고 사

---

42) 양승규(2005), 『보험법』.

43) 보험경영연구회(2010), 「보험과 리스크 관리」.

44) 상법은 손해보험과 인(人)보험으로 분류하고 인(人)보험을 다시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이때 상해보험은 제3보험에 포함됨.

람의 생명이 아닌 상해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의 특징이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없어지거나 손실되는 재산상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이에 속하며, 손해보험은 전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을 따르는데, 이는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손해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은 계약자 본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타인의 물건에 대해 보험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피보험 물건)으로 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고, 생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 만기일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생사혼합보험이란, 보험기간 만기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일까지 생존 시 일정금액의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다.

제3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라 할 수 있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인(人)보험을 의미한다.<sup>45)</sup>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패질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다.<sup>46)</sup>

45) 상법 제73조.

46) 양승규(2005), 『보험법』.

〈표 IV-1〉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와 특징

구분	보험의 대상	소유권	보상방식	차익발생가능여부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	본인 또는 타인	생존·사망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
손해보험	물건 혹은 재산	본인	손실이 발생한 만큼만 보상	불가능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	본인 또는 타인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보상	불가능

2) 보험급부에 따른 분류

보장성보험이란 보험만기(혹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장성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과 그 밖에 보장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순수보장성보험이란 보험만기(혹은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며,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sup>47)</sup>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성은 위험보장기능과 저축·투자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작고, 저축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을 경우 만기에 보험이익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보험금을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매월 납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이익은 비과세된다.<sup>48)</sup>

47)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48)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즉,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sup>49)</sup>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계약자(고객),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 또는 재산, 그리고 보험자(보험회사)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한다. 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가 타인(예: 배우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을 피보험자(보험의 목적)로 하는 타인의 보험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서상 보험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 수익자가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그 사정여하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sup>50)</sup>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 기존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의 계약자 변경은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 물건은 동일하게 두되 계약자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sup>51)</sup>

49) 상법 제638조.

50) 상법 제733조 제1항.

51)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5호.

〈표 IV-2〉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

구분	피보험자	
	피보험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자기를 위한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자기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타인의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자기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타인의 보험

자료: 손영철 외(2014).

### 다. 보험상품의 세제

#### 1) 자기를 위한 보험

##### 가)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만기보험금 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과세는 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혹은 중도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의미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만기 혹은 중도 환급금 중에서 과세대상이 될 보험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의 보험금은 전보보상의 원칙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므로 이를 위한 보험금 수령은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sup>52)</sup>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손해액-납입보험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은 전보보상원칙 적용으로 인해 보험금이 손해액을 넘지 못하므로 보험차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 보험금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보험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자 자신 혹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까지 세

5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참조.

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는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공제 한도는 100만 원,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 나)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만기 혹은 중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계약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보험차익은 ‘보험금-총납입보험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험차익 계산 시 총납입보험료는 보험금 수취인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타인이 자기를 위해 납입해 준 보험료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과세 행정상 보험금의 경우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험금 전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로부터 발생한 보험차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sup>53)</sup>

전체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료 이외에 투자된 보험료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과세 시에는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역시 투자된 자금은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이로 부터 자본이득과 이자, 배당 등의 소득발생이 가능하나 이 역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투자된 보험금은 은행예금과 실질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무관하게 예정이율에 따른 급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저축성보험의 경우 그 실질이 예금상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그 실질 역시 펀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최저보증이율 등 변액보험상품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서의 특징에 더 많은 무게를 두어 과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서도 보험금이 만기 환급

53) 국세청, 「2001년 개정세법해설」.

형태가 아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형태로 지급될 경우 해당 보험금은 비과세한다. 생명보험 계약에서의 사망사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혹은 상해보험의 상해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은 전보적 보상원칙에 의한 손실의 원상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보험금이 주어지 보험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또한, 중도 해지 혹은 만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보험금을 납입하고,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 시 이를 수령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인 경우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은 사망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고 지급된 보험금은 계약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금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sup>54)</sup> 단,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납입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 경우 일시 보험료 2억 이하 즉시연금이 이에 해당하며, 만기일과 보험금 지급기간이 모두 10년을 넘어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며,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보험료를 5년 이상 매월 납입하는 월납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역시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 종신행 연금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sup>55)</sup>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에 관한 시발점은 산업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본은 부족하나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미미했던 산업화 초기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이 확대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는 1991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 초기 3년 이내 단기 보험의 보험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차츰 과세범위가 확

54)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5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대되어 현재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만 비과세하고 있다. 현재도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나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노후 장수리스크까지 책임지는 연금자산으로 연결되는 장기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장기 보유에 대한 비과세는 여타 업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와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2)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시 과세는 상속 및 증여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개인인 경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였으나 보험사고(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계약자와 다른 수익자가 수령하는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수익자의 보험금 수령에 대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게 되므로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은 실질을 중시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을 동일하게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sup>56)</sup> 즉, 실질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취하여 수익자에게 지급(상속 혹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금을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수취하여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sup>57)</sup> 이는 보험에 대한 권리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본인이 기여한 보험으로부터 얻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57)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는 급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 규정<sup>58)</sup>하고 있는 상속 및 증여 간주 규정의 대상 보험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해보험금의 경우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전보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상해를 원상복구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므로 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타인)가 납부한 보험료와 수익자(본인)가 납부한 보험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존재하면 상증세법에 따라 타인의 납입비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과세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저축성보험 등의 경우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타인이 대납한 경우에도 보험차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 나) 보험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의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상증세법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 금액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sup>59)</sup>

법인이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종업원 한사람당 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소

58)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59) 상증세법 제34조.

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된다. 그러나 종업원 한사람당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보험이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법인의 근로자를 위해 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근로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의 보험차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입법과정을 통해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2. 이슈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험 관련 세제의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 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13년간 1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1976년 연간 12만 원 한도로 시작되어 1978년 15만 원, 1979년 24만 원, 1992년 50만 원, 1999년 7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2002년 10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15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그리고 세제혜택 방식은 소득공제로 적용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보장성보험료의 한도는 2002년 1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 상한선은 13년간 동결되어 왔는데, 2002년의 100만 원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2015년 현재 144만 원이 되어야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의 실질적인 혜택은 100만 원으로 결정될 당시의 69%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의 수준을 물가상승(하락)률과 연계하여 지수화(indexing) 등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사회안전망의 대부분을 제공해 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회안전망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보장성보험을 통한 사적안전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적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적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적 사회안전망 제공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나. 생명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문제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으나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상속자에게 상속되며 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한 생명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사망 시 남은 가족이 1년 이내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조사<sup>60)</sup>가 있을 만큼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주거를 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감안하여 가장(家長) 사망 시 보험금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남은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사망보험금 상속에 대한 세제상 배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해외의 보험세제

본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개인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시 세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험세제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60) 라이나생명 블로그, “기획 설성엽의 ‘보험의 재발견’ - 정신적고통 vs. 경제적 고통지수”.

## 가. 영국

영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을 포함한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각각의 범주별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소득 등 비저축소득은 기본세율이 20~50%, 저축소득은 10~40%, 배당소득은 10~32.5%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보험을 수령할 경우 이는 저축소득으로 구분되어 보험금 및 기타 저축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된다.

〈표 IV-3〉 영국의 소득세구분 및 세율

(단위: £, %)

Rate	구간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기본세율	0~31,785	20	20	10
고율세율	31,785~150,000	40	40	32.5
할증세율	150,000~	45	45	37.5

자료: Income tax rate and allowance(2015), HM Revenue & Custo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come-tax/income-tax-rates-and-allowances-current-and-past#personal-allowances>).

영국은 연금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차익(life policy gains)은 과세가능 사건(chargeable events)이 발생한 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여기서 과세가능 사건이란 함은 보험의 해약, 양도, 보험만기, 피보험자의 사망, 연금수령, 부분인출, 연금 일시금 수령 등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건을 칭한다. 과세 시기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과세 가능사건이 발생한 직후 혹은 보험연도 말에 보험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며, 보험차익은 기본적으로 '보험금-납입보험료'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투자성이 가미된 비적격보험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고율 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Top-slicing relief를 통해 납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sup>61)</sup> 여기서 Top-slicing relief 방식이란 보험차익을 보험계약이 경과한 연도로 나누어 연도별 수익으로 할당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61) HM Revenue&Customs(2014), Gains on UK life insurance policies, p. 18 참조.

적격 생명보험계약<sup>62)</sup>에 대해서는 과세가능사건을 축소적용하여 10년 유지 시(혹은 계약기간 3/4 이상 기간 경과) 만기보험금이 비과세되는데, 이때 대상계약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생명보험으로 해지가치가 예정 총납입보험료의 75% 이상, 보험료 납입주기 1년 이하, 보험료 분산납입 부합 조건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비과세 조건은 적격생명보험 계약이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sup>63)</sup> 적격보험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수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가 동일한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 시 상속세를 부과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증여의 결과로 보아 자본이득세(증여세)로 과세한다. 단, 수익자가 계약자의 배우자일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sup>64)</sup>

## 나.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자·배당,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보험차익 역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미국은 종합과세 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매해 결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해약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여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단, 특정한 종류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납세자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는 조정 총소득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sup>65)</sup>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본인과

62) 생보사가 취급하는 사망이나 질병 보장이 포함된 10년 이상의 생명보험, 종신연금 등이 해당.

63) HM Revenue&Customs(2014), Gains on UK life insurance policies, p. 3.

64)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heritance-tax/leaving-assets-spouse-civil-partner>).

65) IRS(<https://www.irs.gov/Individuals/Questions-and-Answers:-2013-Changes-to-the-Itemized-Deduction-for-Medical-Expenses>).

배우자 중 한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조정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계약 유지단계에는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적격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 수령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 비적격 보험인 경우 연간급부가 연간 보험료 납입액보다 클 경우 그 해 해약환급금 순증가액에 대해서는 매년 과세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단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만기 혹은 해약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금(환급금) - 납입보험료'를 과표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중대질병에 의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부과 대상이 된다.

〈표 IV-4〉 세제적격 보험의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급부 종류	내용
사망보험금	비과세(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과세)
만기환급금	보험금 - 납입보험료 총액
중도해약·인출	해약환급금(또는 중도 인출금) - 기납입보험료
보험계약 타인 이전	보험금 - 매입금액(매입자에 과세)
배당금 수령	비과세
연간 보험적립금 증가	과세이연(단, 비적격보험은 매년 과세)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같은 경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총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상속세 납부액은 총상속액에서 장례식비 등 공제항목 공제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속세 비과세의 예는 영국과 같다. 이는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부부가 함께 생성한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판단하며 상속세의 과세는 세대 간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보험금 수령 시 보험계약자

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수증자가 계약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보험사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동등조건의 계약을 할 경우에 부과하는 일시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일본**

일본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일시소득, 잡소득,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해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다.<sup>66)</sup>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적격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엔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생명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로 구분하여 각각 5만 엔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격 생명보험 계약은 본인, 배우자, 친족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지칭하는데, 이때 생명보험이라도 보험기간 5년 미만 저축보험, 재형저축 관련 보험, 주택대출 포함 보험, 상해보험계약 등은 제외되어 세제혜택은 보장성 보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5〉 일본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방식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액
~25,000엔	전액
25,000엔~50,000엔	보험료×0.5 + 12,500엔
50,000엔~100,000엔	보험료×0.25 + 25,000엔
100,000엔~	50,000엔

자료: 국중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66) ‘Ⅲ.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계의 일본사례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및 이원적 소득세제 참고.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보험차익은 일시소득으로 과세하되,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그 차익은 잡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일시 수령 시에는 발생한 보험차익의 절반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이때 과세 대상 보험이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와 특별공제 50만 엔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sup>67)</sup>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은 금융유사상품으로 취급하여 발생한 만기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같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는 보험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겠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사망보험금과 사망퇴직금에 대해서 법정상속인 한사람당 500만 엔을 과세대상 소득으로부터 공제한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엔에 추가로 복수의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일인당 1,000만 엔까지 상속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공제 후 금액은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일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고령층세대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68)</sup>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증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발생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으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 IV-6〉 일본의 보험금 수령 시 상속·증여 세제

사례	예시			부과세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	A	A	B	상속세
계약자=수익자	A	B	A	소득세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	A	B	C	증여세

67) 과세대상 소득=(만기보험금-납입보험료-특별공제 50만 엔)×1/2

68) 국중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 4. 소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보험세제의 현황과 이슈 및 해외의 보험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보험세제의 개괄적 특징 및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외사례로 살펴본 국가들의 경우 보장성보험료에 관한 세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나 국가별 공적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보장성보험은 사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고 공적 사회안전망 역시 취약하나 재정적인 문제로 공적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 및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저축성보험의 경우 편입되는 금융상품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저축 장려 및 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일본·영국 등의 해외사례에서도 과세이연, 연분연승법을 이용한 세금감면, 과세대상금액 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보험금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해외의 보험세제는 여러 부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데, 먼저 우리나라처럼 보장성 조사대상 국가 중 보험료 납입단계에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었다. 미국은 사적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부분이 취약한 사적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적보험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한다.

수령 시 보험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에는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사망보험금 등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보험금을 본인수령 시에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 시에는 과세가 되는 우리나라의 보험금 수령단계 세제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미국, 영국, 일본 등 조사국의 상속세제에서는 상속자가 배우자인 경우 상속세를 면세해 주거나 혹은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공제항목을 두어 사망 시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제상 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상 배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 보편성을 유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는 많으나 확충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세제가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